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금주의원·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52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 목록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추가 (문금주·정점식의원안)	2

I. 개요

1. 문금주의원·정점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5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문금주의원 · 정점식의원 등 22인
- (2) 제 안 일 : 2024. 6. 20.
- (3) 회 부 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조세특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6호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 목록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추가 (문금주·정점식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조세특례의 제한(제3조) ○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 목록 -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 세법 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 목록에 법률 추가 ○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 목록 - (현행과 같음)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추가 ○ 시행일: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 문금주·정점식의원안 2024. 6. 20. 발의(의안번호 752)

☐ 개정안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¹⁾의 의결을 전제로,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의 범위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을 열거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국세기본법」·「소득세법」 등 세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세법 외 일부 법률이 포함됨.²⁾

1) 문금주의원·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6)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이는 비과세·감면 등 조세특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일괄하여 규정하려는 취지이고, 예외적으로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세법 외 법률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 등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은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①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②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 지정, ③남해안종합개발청의 설치 등을 규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하고 있음.³⁾

동 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3)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25조에 따른 남해안종합개발청의 장(이하 “남해안청장”이라 한다)은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남해안권 도시계획, 강·섬 발전 및 특색화 사업, 숲 정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립공원 관리,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한태평양 관광휴양 거점구축, 광역관광개발 등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 해양 치유단지, 갯벌 자원화 등 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이차전지·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로·항만·공항·버티포트·연륙교·연도교·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8. 남해안권발전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남해안권 인근 지역과의 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1.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12. 연차별 재원조달 대책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사업시행자 등) ①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남해안청장이 지정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남해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남해안권발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남해안발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남해안종합개발청의 설치 등) ①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이하 “남해안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남해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남해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④ 남해안청을 설치할 위한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⑤ 남해안청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중에서 남해안종합개발청장이 지정함.

- 개정안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서 직접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남해안권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동법을 통해 추후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남해안권은 우수한 자연생태 자원을 기반으로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국가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춘 권역이지만,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 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동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도 부족하여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정부는 2010년에 최초로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⁴⁾ 2020년에 기존 계획을 변경하여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남해안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변경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2020년)]

비전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
목표	- 동북아 5위 경제권 도약 - 새로운 국토성장축 형성 - 2시간대 통합생활권 달성
추진전략	- 해안권 연계에 의한 광역관광벨트 형성 -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조성 - 산업 및 관광거점 연계 인프라 구축 - 동서간 상생·협력벨트 조성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재구성

4) 舊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음.

그러나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에 따르면, 90일 이내로 우리나라에 체류한 외국인 여행객의 지역별 방문율이 부산은 17.6%였지만, 전남은 0.9%, 경남은 1.8%로서, 서울 80.3%, 경기 13.3%, 제주 8.7%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었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 및 공사 등을 담당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법인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유인이 생길 수 있고, 세액감면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 직접 규정하여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 법률의 범위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별도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예외 사항인 조세특례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외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의 통합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음.

둘째, 개정안에 따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서 개별적으로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 추후 동법에 조세특례를 신설하거

나 개정할 때 세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아닌 동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조세특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세특례 상호 간의 관계와 총체적인 조세특례 체계를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기획재정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일부 조세특례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면 조세특례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